

제284회 임시회
2009.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0. 21.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0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6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10.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권한위임사항의 변경(추가 및 삭제 등)

○ 제2조제1항 별표 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투자유치과 > : 삭제 9건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
 - ▶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및 협의
 -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등
- 위의 사무가 30만 제곱미터 미만 일반산업단지인 경우 시장·군수 사무

※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자원관리과 > : 삭제 11건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등록·행정처분·등록요건 고시 등
 -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신고수리, 행정처분 등
 -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등록·행정처분·등록요건 고시 등
- 위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

※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하천과 > : 추가 3건, 삭제 1건

- 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및 삭제
 - ▶ 보상금의 공탁,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추가)
 -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추가)
 -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삭제)
- 보상금액의 산정 지급통지 등 조문정비

※ 관계법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광항공과 > : 삭제 1건

- 관광지 지정·구성계획 등의 고시, 위임사무에서 삭제

- ▶ 관광지 지정·구성계획 등의 고시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환경정책과 > : 추가 4건

- 고탄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추가

- ▶ 고탄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등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필요

※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기타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

- 회 계 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삭제 1건 포함)
-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항 별표 3(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방호구조과 > : 추가 20건

-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

-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등 6건
- ▶ 방염처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5건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6건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신고 등 3건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조제4항 별표 4(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총 무 과 > : 추가 1건

-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위임하는 조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삭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군·위임사무에서 삭제

- 투자유치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

✓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및 협의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전 사용허가,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등 9건이 30만 제곱미터 미만 일반산업단지인 경우 시장·군수 사무로 되어 삭제

- 자원과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등록·행정처분·등록요건 고시 등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신고수리, 행정처분등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등록·행정처분·등록요건 고시 등 11건의 업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 되어 삭제

- 하천과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 ✓ 보상금의 공탁,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2건을 추가하고
-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삭제하며
- ✓ 보상금액의 산정 지급통지 등 조문을 정비

○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삭제

- 관광항공과의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업무를 시군 위임 사무에서 삭제하여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고시토록 함.
- 환경정책과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 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등”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무등 4건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유지 필요에 따라 시·군위임사무에 추가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의 민원업무중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신고등 6건
 - ✓ 방염처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5건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6건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신고 등 3건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 총무과의 업무중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위임사무 조항 신설

○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

- 회계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삭제 1건 포함)
-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의 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투자유치과란을 삭제하고 회계과, 자원관리과, 하천과, 산림녹지과, 관광항공과, 환경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회계과	1 2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 (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자원관리과	1 2 3 4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변경) 허가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해임요구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4.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5.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증인 다. 보고 및 검사 등(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라. 개선명령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6.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p>전기사업법 제71조</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동법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34조</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동법 제39조제6항 동법 제40조제4항 동법 제78조제4항</p> <p>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38조 및 41조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51조</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제8848호,2008.1.17> 제2항</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원 관리과	7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동법 제18조제2항
	8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9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동법 제28조
	10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1조제1항 동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법 제78조제4항
	11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1조
	12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8조
하천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동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동법 제30조제1항 동법 제30조제2항 동법 제30조제10항 동법 제30조제4항 동법 제30조제5항 동법 제30조제6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동법 제30조제7·8·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32조

분야별	인원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하천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제33조 동법 제33조 제1항제1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2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3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4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동법 제33조제6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 	동법 제33조제8항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관리 	동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동법 제90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9조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동법 제70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동법 제27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동법 제38조제1항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동법 제38조제4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동법 제46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51조
	22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동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5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조사·통지	동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동법 제78조
	25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동법 제72조
	26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동법 제89조
	27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동법 제91조
	28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98조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61조
	30	·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8조
	32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동법 시행령 제4조
	33	· 보상금의 공탁	동법 제8조
	34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동법 제9조
	35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6	· 도유재산 용도폐지	동법 제11조
	산림 녹지 과	1	· 산림병해충의구제.예방에대한 조치명령
2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사항의 명령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의 지정 및 지정해제, 통지 및 고시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제4항
3		· 종.묘생산업의 등록	동법 제16, 동법시행규칙제13조
4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동법 제16조
5		· 보안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사무 라.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4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동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6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법률제 5조
7		· 간선임도 설치계획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8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관광 항공과	1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제6조
환경 정책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17조
	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에서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동법 제41조제4항 동법 제42조
	4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에서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3조제2항, 제3항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동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9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에서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동법 제68조
	10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납부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11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제27조

분야별	인원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정책과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동법 제28조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1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제3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정책과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p>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별표8</p> <p>”</p> <p>”</p> <p>”</p>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3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방구 조 과	1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 동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동법 제10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2조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2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32조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3	·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률 제16조 동법률 제17조 동법률 제19조 동법률 제35조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4	·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률 제31조 동법률 제32조 동법률 제34조 동법률 제35조 동법률 제44조제2호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5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동법 제16조제3항 동법 제16조제5항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별표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 무 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대 총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수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5급상당 지방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	농업기술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 원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농산사업 소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9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 업 소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내수면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회계과	1	· 은닉도유재산 신고 처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6조	회계과	1	·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 도유잡종재산 관리	동 조례 제3조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 (매각은 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 협의에 한함)		
	3	· 도유폐천부지관리 및 매각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투자유치과	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 사무		투자유치과	2	<삭제>		
		가.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삭제>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삭제>		
		다.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삭제>		
		2				라.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에대한 협의		<삭제>
		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삭제>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처리를 위한 검사 의뢰				<삭제>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삭제>		
		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삭제>		
		차. 사업시행자의 감독 조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처분고시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원 관리과	1~5	(생략)		자원 관리과	1~5	(현행과 같음)	
	6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인판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8조		<삭제>	<삭제>	<삭제>
	7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삭제>	<삭제>	<삭제>
	8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동법 제30조		<삭제>	<삭제>	<삭제>
	9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38조		<삭제>	<삭제>	<삭제>
	10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0조		<삭제>	<삭제>	<삭제>
	11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삭제>	<삭제>	<삭제>
	12	·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삭제>	<삭제>	<삭제>
	13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동법 제41조		<삭제>	<삭제>	<삭제>
	14 ~20	(생략)			6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하천과	1~29	(생략)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 11조 <신설> <신설> <신설>	하천과	1~29	(현행과 같음)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 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30	보상금액의 산정			30	(현행과 같음)	
	31	보상금 지급의 통지			31	(현행과 같음)	
	32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32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3	보상금의 공탁	
	33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34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34	도유재산 용도폐지	35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산림 녹지과	1	(생략)	산림자원의 구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산림 녹지과	1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구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2	· 천연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 지정 및 필요한 사항의 명령 나. 천연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천연보호림 등의 지정 및 해제, 통지 및 고시			2.	· <u>산림유전자원보호림</u>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 지정 및 필요한 사항의 명령 나. <u>산림유전자원보호림</u>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u>산림유전자원보호림</u> 등의 지정 및 해제, 통지 및 고시	
	3~8	(생략)			3~8	(현행과 같음)	
관광 항공과	1	(생략)	동법 제50조재 항,제52조제3항	관광 항공과	1	(현행과 같음)	<삭제>
	2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삭제>	<삭제>	
환경 정책과	1~13	(생략)		환경 정책과	1~13	(현행과 같음)	자연산과채환 용출산(채환)법 시행규칙 제2조 의 발효 “ “ “
	<신설>	<신설>			14	· <u>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u> 중 다음 사무 가. <u>고형연료제품제조자의 공급 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u> 나. 「 <u>대기환경보전법</u> 」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인한 경우 <u>고형연료 제품 사용 신고서</u> 접수에 관한 사무 다. <u>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u> 접수에 관한 사무 라. <u>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 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u> <u>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방 호 구조과	1	(생략)		방 호 구조과	1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2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신설>				가. 등록	동법 제6조
		<신설>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 제7조
		<신설>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동법 제9조
		<신설>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동법 제10조
		<신설>				마. 과징금 처분	동법 제22조
		<신설>				바. 등록취소 청문	
	<신설>	<신설>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신설>				가. 등록	동법률 제6 조
		<신설>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률 제 17조
		<신설>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동 법 률 제19조
		<신설>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동 법 률 제35조
		<신설>				마. 과징금 처분	
	<신설>	<신설>			4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신설>				가. 등록	동법률 제 31조
		<신설>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률 제 32조
		<신설>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동법률 제 34조
		<신설>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동법률 제 35조
		<신설>				마. 과징금 처분	동법률 제 44조제2호
	<신설>			바. 등록취소 청문			
<신설>	<신설>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16조제2항		
	<신설>			가. 등록	동법 제16 조제3항		
	<신설>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동법 제16 조제5항		
	<신설>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 대상 기관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 대상 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생략)			총무과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내 수 면 연 구 소 장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조 제 2 항	